

#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2.12.23. 규정 제23호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재단의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
2. 주요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
3. 복지 관련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[별지 제1·2호 서식]에 의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, 간사는 복지기획부 부장이,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직원이 담당한다.
- ⑤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해촉)**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원하는 때
2. 질병,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
3. 기타 재단의 사정에 따라 해촉할 필요가 있게 된 때

**제7조(회의)**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8조(수당)**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 가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자문위원 위촉수락서

- 성 명 :
- 생년월일 :
- 주 소 :

위 본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 
남양주시복지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됨을 수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수 락 인 : (인)

**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**

[별지 제2호 서식]

제 호

## 위 촉 장

성 명 :

귀하를 20 년도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 
위촉합니다.

20 년 월 일

**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**